



제333회 시의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2025. 10.

시의회 보고안 건

[예산전용]

2025. 10.



서울시립미술관

서울사진미술관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전용 보고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
-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2023.7.28. 행정안전부 훈령 제298호)

□ 예산전용 개요

- 전용목적 : 사무관리비(낙찰차액) 활용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
- 전용내용 : 기간제근로자 2인 퇴직급여 지출
- 전용금액 : 금15,000,000원(금일천오백만원)

□ 예산전용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과목				예산현액	변경액		변경 후 예산액
	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	
전용	문화 예술 진흥	미술과 운영 활성화	서울사진 미술관 운영	기간제근로 자등보수 (101-04)	109,800	15,000	-	124,800
				사무관리비 (201-01)	3,113,634	-	△15,000	3,098,634

□ 예산전용 사유

- 개관 준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발생, 퇴직급여 지출 등으로 예산 부족 발생 (약 15,000천원)
 - '25년 5월과 8월 기간제근로자 2인의 최대 노동 계약 기간(23개월)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정산금 발생했으며(약 12백만원),
 - 연초부터 2025년 5월 29일로 예정되었던 서울사진미술관 개관준비를 위해 학예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대폭 증가함.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약 15백만원 부족분 발생
-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지급
 - 2025년 서울사진미술관 사무관리비 시설관리용역 비용 중 낙찰차액으로 약 70백만원 잔액 발생하여 해당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함.